

『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 요구에 대한 청원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89명

○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698-1번지 이태봉외 88명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

3. 청원사유(내용)

○ 청원인은 구미지역 법인택시 근로자들로서, 2010년 4~5월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5년내 35대 감차로 조사된 이후, 4공단 지역의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과 KTX 개통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도심의위원회에서 재산정 승인을 받아 2011년 10~11월 용역조사를 하였으나, 개인택시 단체의 불응으로 중단된 용역조사를 완성하여 줄것을 요구함.

4. 참고사항

○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

-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 유지를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며,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·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고
-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·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

※ 근 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

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(국토해양부)

○ 택시 총량제 재산정은

- 시·도지사의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(5년 주기) 이후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시행

※ 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4항

<택시 총량제 재산정 요건>
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

- ①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
- ② 사업구역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
-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□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

- ①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

○ 택시총량제 산정 시기

- 총량제 산정 : 매 5년 단위 실시
- 총량제 재산정 : 수송력 공급계획 변경 필요시

○ 2010년(2차) 총량제 실시 결과(매 5년 단위 실시)

- 조사기간 : 2010. 4월 ~ 5월
- 실시결과 : **35대 감차** (1,773대 ⇒ 1,738대)
- 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: 2010. 12. 28

○ 2011년 총량제 재산정 실시

- 실시배경 : 경상북도 2010년 택시총량제 심의결과 통보시("10.12.29)
"필요시 총량제 재산정 가능" 명시
- 조사기간 : 2011. 10 ~ 12월
 - 개인택시 시지부 총량제 재조사 거부 및 조사방해로 법인택시만 조사
 - 개인택시 조사불응으로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법인택시 조사자료만으로 산정 가능(국토해양부 답변)
- 소요예산 : 13,600천원
- 재산정 결과 : **감차 8대** (법인택시 자료만 반영 조사)

- 총량제 재산정 결과 심의의뢰 ⇒ 도 민생경제교통과 (‘12. 2. 15)
-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변경 승인 요청
※ 총량제 재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승인 사항임
- 국토해양부가 구미시에 변경 승인 불가 통보 (‘12. 3. 13)
※ 사유 : 구미시의 재산정 사유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변경승인 불가.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698-1번지 이태봉외 88명으로부터 접수된 「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 요구」 청원의 건으로서,
- 택시총량제의 법적 근거에 의하면,
택시 총량제 산정은
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 제3항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(국토해양부)에 의거 매 5년마다 시·도지사는 수송력 공급 계획을 수립·공고하고, 동 계획에 의거 시장·군수가 총량제 산정을 실시하며,
택시 총량제 재산정은
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,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,
- 상기 법적 근거에 의거,
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1차 총량제를 실시하였고, 2010년도에 2차 총량제를 실시하여 총1,773대에서 35대가 감차된 1,738대로 2010.12.28.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나,
- 2010. 8.26. 구미시 법인택시(노조대표 이태봉외3)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“재산정”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, 2010.12.29. 경북도의 총량제 심의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

<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 >

경주시, 구미시, 칠곡군 등에는 택시노조 등 택시운전자가 총량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는바, 시·군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택시총량제 지침에 의거 재산정하여 심의 요청 하시기 바람

- 구미시에서는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위하여 2011년도에 13,600천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, 2011년 10월~12월까지 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「총량제 재조사」를 실시하였으나, 개인택시가 조사에 불응하여 법인택시로만 조사를 실시하던 중,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법인택시 자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,
- 그 재산정 조사결과(법인택시 재산정조사 자료만) 8대 감차로 확인되었고, '12. 2. 15 경상북도에 심의 의뢰하였으며, 경상북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“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사유” 요건 미비로 재산정 조사결과는 “**변경 승인 불가**” 통보를 받았음.
- 그러므로, 「택시 총량제 재산정 요구」 건은 3차년도(2015년) 택시 총량제 산정시,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향후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,
- 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1조 제2항에 의거 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”에 해당되므로,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(附議)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